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221]
의견서

2021. 9.

[사] 오픈넷



대표자: 황성기

주소: [우]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 (서초동, 한림빌딩)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1. 본 개정안의 요지

- 본 개정안은 방통위설치법 제22조 제4항상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서면(또는 전자)의결을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까지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반대의견

- 현재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 통신심의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권 등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위원간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도의 당연한 대원칙이라 할 것임. 서면(전자)의결은 이러한 대원칙의 예외로서 회의를 통한 위원들간의 토론, 논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제도인바, 함부로 회의를 통한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배제하는 서면(전자)의결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채택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만으로 한정되어야 함.
-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22조 제4항에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한하여 서면의결이 예외적으로 규정된 것은,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존재가 명백히 특정되고, 이 특정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정보로서 불법성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정보일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의 신속하고 긴급한 구제가 무엇보다 긴절한 특수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 회의의 소집 및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의결을 하도록 의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 단순히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만 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음. 이는 인터넷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의 회의 절차의 수립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회의 절차를 생략하는 예외적 서면(전자)의결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또한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해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서면의결의 상시화도 가능케 하는 것으로써 남용의 우려도 크다고 할 것임.

- 또한 ‘저작권 침해 정보’는 불법성이 중대, 명백한 정보로 보기 어려움. 개별 정보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한 웹사이트 전체를 저작권법 위반의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역시 웹사이트의 운영 방식, 구조, 전체 게시물에서 저작권법 위반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검토해야 하는 분야로 심의·회의 절차를 함부로 간소화해서는 안 됨.

3. 결론

- 합리적 이유없이 방통심의위의 회의, 의결 원칙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철회·폐기되어야 함.

<끝>